질문: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 발송은 어디로 하나요?

답변: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 $12 \times (건강보험증)$ 에 따라 19.6.12.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

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을 발송합니다. 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사방문, 홈페이

지, 고객센터(1577-1000), 모바일앱 'The 건강보험'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이나 주

민등록상 주소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질문: 상시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만에 퇴사했으면 어떻게 신고하

면 되죠?

답변: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수가 발생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취득

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반대로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한 상태로 보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자격상실신고서 작성

후 사업장 관할 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
질문: 임의계속자격 급여정지로 보험료 경감이 되나요?

답변: 임의계속가입자는 이미 50% 경감 되어있으므로 급여정지로 추가경감이 불가능합니다.

(단, 임의계속가입자의 군입대, 시설수용시 보험료 100% 감면) 또한, 임의계속가입자와 피부

양자가 모두 출국된 경우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.

질문: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?

답변: 퇴직 이전 18 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 년 이상인

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,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

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

된 제도입니다.

질문: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도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됩니까?

답변: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대상이 아닙니다. 단, 법인

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

자이므로 임의계속 가입신청 가능합니다.